

예산총칙

202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46,619,823	13,398,595
일반회계	395,318,563	11,859,557
특별회계	51,301,260	1,539,038
기타특별회계	51,301,260	1,539,038
상수도 특별회계	23,927,634	717,829
수질개선 특별회계	20,411,581	612,34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25,378	12,761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1,683,205	50,49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024,796	30,744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182,034	5,461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457,098	13,713
주차장 특별회계	3,189,534	95,68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914,484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000,000천원 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